

### 위층 집 층간소음에 우퍼스피커 설치한 나, '스토커'라고요?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최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현관문을 수시로 두드리고, 망치 등으로 천장을 친 A씨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됐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실행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를 두고 이성 간 문제를 넘어 생활일반 분쟁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싫다는데도 이성에게 계속 연락하는 게 스토킹 범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지난 10월 13일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예를 설명했는데, 일반 시민 기준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두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 중 하나로 봤습니다.



〈소음 자료사진〉

◇ 우퍼스피커 소음 계속 내면 스토킹이에요?

경찰소통포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우퍼 스피커를 윗집을 겨냥해 설치해 지속적으로 틀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퍼 스피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음향(공기 전파로 인한 소음)을 '물건'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층간소음 항의하면 3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요즘 층간소음이나 담배 연기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층간소음 혹은 담배연기의 원인을 야기한 주민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첫 사례와 같이 주민에게 계속 찾아가거나, 전화 혹은 쪽지 등을 계속해서 붙이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층간소음, 담배연기로 가슴 앓이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성적 정정 요청하려고 강의실 밖에서 선생님 기다리면 스토킹?

네,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집 뿐 아니라 직장 등 생활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지속적인가 하는 점인데요.

선생님은 정당하게 성적을 주었지만 학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선생님을 기다리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라고 볼 것인지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돈 안 값는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면 스토킹인가요?

네, 역시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또는 직장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나 내용이 돈을 갚으라는 것이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누군가를 계속 취재하는 파파라치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취재 상대방이 기자가 지속해서 접근해 불안감이 생겼다고 신고하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취재 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물론 파파라치 취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고하면 응급조치 혹은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음식 환불했는데도 계속되는 항의전화,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잘못된 음식 배달에 사과하셨고 이에 따른 환불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이의를 넘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위 ‘블랙컨슈머’의 지속적 문자나 전화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토킹 처벌법은 필요합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경범죄밖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중요한 건 잘 선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범죄 판단의 원인이 되는 ‘정당한 이유’를 잘 살펴 선한 얼굴의 스토킹 방지법을 악마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처/조선일보)